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피보험기간 15년 이상인 경우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확대 〉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910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피보험기간 15년 이상인 경우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확대	2

I. 제안경위

2024년 10월 25일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를 달리 규정하면서,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0세 이상인 경우 최장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조기퇴직한 중장년 다수가 준비없이 갑작스러운 퇴사를 경험하고, 퇴직 후 긴 재취업 소요기간이 발생하면서 구직급여를 통한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보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확대하여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1).

Ⅲ. 검토의견

1. 피보험기간 15년 이상인 경우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확대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피보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별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 고용보험법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비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한다.

<개 정 안>

■ 고용보험법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300일

비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하나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이직(離職)¹⁾한 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고 함)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른데, 현행법은 이를 [별표 1]에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별표 1]에 따르면, 피보험기간은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구분되고, 연령은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나뉨.

■ 현행 고용보험법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비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한다.

즉, 피보험기간이 10년이 넘더라도 10년 이상의 범주에 해당하게 되는데, 조기퇴직한 중장년 다수가 준비없이 갑작스러운 퇴사를 경험하

1)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끝나는 것을 말함)을 의미함

고, 퇴직 후 긴 재취업 소요기간이 발생하면서 구직급여를 통한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피보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현행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270일]에서 [50세 미만 270일, 50세 이상 300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처했을 때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여 조속히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 고용보험법 개정안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이직일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현재 연령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300일

비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한다.

다만,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확대 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구직급여의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근로자계정)의 적립금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고용보험기금 재정현황

(근로자 계정, 단위: 억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수입	118,508	198,171	199,831	187,371	185,117
	지출	139,452	204,566	210,463	180,507	170,407
	수지	△20,944	△6,395	△10,631	6,864	14,709
	적립금	73,101	66,466	55,828	62,611	77,319
실업급여 계정	수입	84,756	136,287	148,141	135,675	143,879
	지출	98,558	138,860	144,138	141,325	143,307
	수지	△13,802	△2,573	4,003	△5,650	573
	적립금	41,374	38,666	42,665	36,953	37,525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계정	수입	33,752	61,884	51,691	51,696	41,238
	지출	40,894	65,706	66,325	39,182	27,101
	수지	△7,142	△3,822	△14,634	12,513	14,137
	적립금	31,726	27,800	13,163	25,658	39,794

※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다음과 같은 관계부처의 의견이 있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	소정급여일수 확대는 노동시장 참여 촉진과 고용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필요
기획재정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확대는 노동시장 참여 촉진 필요성 및 고용보험 중장기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

문 의 처
02)6788-5538